「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01월 13일, 장문혁의원 대표발의

○ 회부일자 : 2022년 1월 17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7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1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문혁 의원)

가. 제안이유

○ ‘22년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평창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직무대리의 순위(안 제2조, 제3조)

○ 직무대리자의 책임(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남섭)

○ 본 규칙안은

'22년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되는「지방자치법」을 근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 규칙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직무대리의 순위

안 제4조에서는 직무대리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부.

평창군의회 규칙 제 호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

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